

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

- 김 문 천 의원입니다.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,
 -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
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.
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
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 - 개정안 부칙에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5년 8월
5일부터 적용한다.”를 삭제하고 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
시행한다.”로 한다.

-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.

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(지방자치법 제32조 준용)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교육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</p>	<p>제1조(목적)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7조(회기수당 지급기준) ① 위원에게 지급 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80,000 원 으로 한다. ②~③(생략)</p>	<p>제7조(회기수당 지급기준) ① 110,000 원..... ②~③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5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	<p>제7조(회기수당 지급기준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